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이기수

고려대 법대 교수

(주)선영메디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1997. 8. 14.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사건번호 1704전사0627

사실관계와 법위반 내용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사실관계

(주)선영메디칼의 대표이사 P(피조사인)는 자기가 공급하는 가정용 온열치료기를 지점 및 지사에게 판매함에 있어 가정이나 병원 등 판매처별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였다. 지점 및 지사와 체결한 계약서 제6조에서 거래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거래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자기가 지정하는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규정한 후, 이 규정에 따라 실제 거래과정에서 지점 및 지사에게 가정, 병원 등 판매처별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 소비자 판매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점 및 지사에게 당해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함은 물론 거래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실제 거래과정

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그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서를 발송하였다.

2) 법위반 내용

피조사인은 지점 및 지사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조사인의 행위는 지점 및 지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 별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여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정된다.

2. 판매목표 강제

1) 사실관계

피조사인이 지점에게는 월 최소 판매량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지사에 대하여는 지사가 관할하는 지점 1개소당 월 최소 판매량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부여한 후 이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2) 법위반 내용

지점 및 지사는 피조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그들의 판매목표는 그들 자신의 영업전략이나 영업계획, 그리고 영업능력 등의 여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피조사인이 자신의 상품에 대한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것은 지점 및 지사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스스로 그를 달성하도록 유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따라서 지점 및 지사계약서에 월 최소 판매량을 명시하고 지점 및 지사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달성을 여부와 계약해지를 연계시키는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피조사인의 판매목표 부여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3. 불이익 제공

1) 사실관계

피조사인이 지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지사로 하여금 지점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사가 관리하는 지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피조사인이 개설하려고 하는 지점개설 예상수대로 지사가 지점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방적 계약해지조항 설정행위를 하였다.

2) 법위반 내용

피조사인이 지점과 지사를 상대로 직접 거래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지점과 지사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조사인은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지사를 통해 지점에게 상품을 공급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마진율보장 등)를 지사에게 부여하는 대신에 지점을 관리하도록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사가 관리하는 지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사가 피조사인이 의도하는 수만큼 지점을 충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전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지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최고절차를 거친 후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최고 후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인은 최고절차도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조사인의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사정권고 사항

1. 피조사인은 거래상대방에게 가정용 온열치료기를 판매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판매하는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피조사인은 거래상대방에게 가정용 온열치료기를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가. 거래상대방에게 월 최소 판매수량을 부과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나.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점의 영업실적이나 자신의 지점개설 예상수를 기준으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방적 계약해지조항을 설정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피조사인은 이에 따라 자기의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지점 및 지사계약서 조항 중 지점계약서 제6조, 제7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피조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지점계약서 제7조, 제12조제3항을 포함한다)를, 지사계약서 제6조, 제8조, 제11조제3항 및 제13조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이와 같은 피조사인의 행위중 1.은 법 제29조제1호에 위반되고 2.는 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어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다.

시정기한

이 수정권고를 수락한 날부터 시정권고 사항 중 1. 및 2.는 즉시, 3.은 50일 이내에 각각 시정하여야 한다.

수락여부 통지기간

이 수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락거부시의 조치

이 수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해설 및 평석

1. 머리말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거래상 지위의 남용(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관건이 되어 있다. ‘再販賣價格維持行爲’라 함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약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1) 의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재판매하는 사업자인 도매상 또는 소매상에게 거래 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예컨대 어느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가장 중요한 가격경쟁질서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경쟁저해성이 크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¹⁾

원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상표제도의 발달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된다. 상표는 물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갖는다.²⁾ 다수의 상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품질, 수량 등과 같은 규격의 동일성을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상표품의 판매가격의 차이는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표품의 성격을 이용하여 판

1) 손주찬, 경제법, 1994, 288쪽.

2) 이기수 외 6인 저자, 지적재산권법, 1996, 607쪽 아래 참조.

매업자, 특히 소매업자가 자기의 점포에 고객을 유인하여 다른 상품의 판매고를 높일 목적으로 특정의 저명한 상표품을 염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유인염가’라고 하는데, 이는 판매업자에게는 효과적인 판매촉진책이 될 수 있지만 제조업자에게는 상품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타격을 준다. 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대응책으로 고안 된 것이 재판매가격 유지제도이다.³⁾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는 두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⁴⁾

(1) 도서정가제 = 法定 再販

지적 창작물인 서적에 대하여는 특별한 예외로서 인정하여, 책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에 의하여 서점의 마진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

(2) 指定再販制度

일반 소비자의 일상용품으로서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고 경쟁이 자유로운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는 활명수, 기초화장품 등 10여개 품목이 있었으나 1984년부터는 지정이 해제되어 현재는 없다.

3.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의 재판매가격유지

1)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의의

사업자단체란 그 명칭, 조직 등 형태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자유업 포함)가 그 意思에 의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황꺽인·권오승, 경제법, 신고판, 1995, 200쪽.

4) 손주찬, 경제법, 1994, 294쪽.

2) 유형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번호	금 지 행 위	예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행위	가격, 수량, 판매조건 등 제한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광고활동의 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거래처 침범 금지, 점포신설제한)
4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	사업자단체의 협의, 과장표시, 광고행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를 대신하여 협의 및 과장의 표시나 광고행위를 하는 행위
6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와 같이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별도로 규제대상이 된다.

4. 독일 경쟁제한법의 체계와 재판매가격유지

독일 경쟁제한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독일독금법)⁵⁾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제2장은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제3장은 행정관청으로서 카르텔청과 연방카르텔청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 제4장은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사건과 과태료 부과절차 및 민사소송에 대해, 제5장은 법률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사항에 대해, 제6장은 경과 및 종결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⁶⁾

이 중에서 제1장이 실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제1장 가운데 제1절과 제2절은 두 가지 경쟁

5) 이 법률의 제정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유럽경제공동체조약과 마찬가지로 195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6) Rittner,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5. Aufl., 1995, S. 121.

제한의 종류로서 ‘카르텔계약 및 카르텔결의’와 카르텔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으로서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인 ‘기타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카르텔계약 및 결의는 그것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위한 생산이나 시장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독일독금법 제1조). 그러나 조건카르텔(동법 제2조), 할인카르텔(동법 제3조), 구조조정카르텔(동법 제4조), 합리화카르텔(동법 제5조), 전문화카르텔(동법 제5조의 a), 중소기업의 협력(동법 제5조의 b), 구매강요없는 공동구매(동법 제5조의 c), 수출카르텔(동법 제6조), 수입카르텔(동법 제7조), 특별카르텔(동법 제8조)의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르텔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동법 제9조). 기타의 계약은 일방당사자가 제3자와 체결할 계약에 있어서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의 결정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동법 제15조). 그러나 출판업자가 그들의 수요자에게 법적 또는 경제적 수단으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구속하거나 자신의 수요자에게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된다(동법 제16조). 출판업자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태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카르텔청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거나 금지된다(동법 제17조).⁷⁾

제3절은 시장지배적기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시장지배적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카르텔청은 그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카르텔청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23조), 결합에 의해 시장지배적 지위가 발생하거나 그 지위 강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카르텔청이 이를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그러나 참여기업이 결합을 통해 경쟁조건이 개선된다는 점과 이러한 개선이 시장지배로 인한 손실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24조제1항 단서).

제4절은 경쟁제한 및 차별행위에 관한 것으로, 기업과 사업자단체가 계약상의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5조).

제5절은 경쟁규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회나 전문단체는 그들의 영역범위 내에서 경쟁규칙을 정하여 그 승인을 카르텔청에 신청할 수 있는데, 참가자들이 카르텔청에 의해 승인된 경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합의는 카르텔계약이나 결의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28조, 제29조).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나 합의가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카르텔청은 이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동법 제31조).⁸⁾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출판업자가 그들의 수요자에게 법적 또는 경제적 수단으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구속하거나 자신의 수요자에게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된다(동법 제16조). 출판업자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태의

7) Rittner,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5. Aufl., 1995, S. 121.

8) Rittner,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5. Aufl., 1995, S. 12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카르텔 청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거나 금지된다(동법 제17조).

5.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심결례

1) 한국신용정보(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공정위 1994. 7. 14. 의결 제94-201호, 9403경촉 116, 심결집 1권(상) 467쪽)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는 신용카드회사들과 '신용카드거래승인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심인이 신용카드회사들의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이를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요청을 받아 이를 신용카드회사에 전송하여 거래승인여부를 통보하거나 소액거래, 불량, 도난카드 등 일정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사를 대신하여 거래를 승인 또는 거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다. 피심인은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용한 대리점계약서에서 '을(대리점)은 수용자에게 갑(피심인)이 권장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되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 또는 애프터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한 후 승인없이 피심인이 권장하는 가격이외의 가격으로 판매 또는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중지할 것,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즉시 수정 또는 삭제할 것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하였다.

2) 미원통상(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공정위 1993. 10. 21. 의결 제93-235호, 9307특515, 심결집 13권 581쪽)

미원통상주식회사는 1993년 7월 당시 직영점이 47개소, 가맹점이 114개소에 달하는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과 'MINISTOP 가맹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다. 피심인은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약 50%를 일괄 구입하여 가맹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추천하고 이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 및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50%의 상품에 대해서도 피심인이 가맹점에게 상품매입처를 추천해 주고 있는데, 이 상품의 가격도 피심인이 추천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중지할 것과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지체없이 수정·삭제할 것,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1개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명하였다.

3) 삼성전자(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공정위 1987. 4. 1. 의결 제87-19호, 심결집 7권 130쪽)

삼성전자주식회사는 1986년 6월에 연금매장 및 기타 특수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공장출하가의 104%로 결정하고 1986년 7월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연금 매장 소장들은 삼성전자 대리점과 재판매가격이 104% 이상이 되도록 새로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 연금매장 소장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특수매장의 재판매가격이 공장출하가의 104%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관계를 중단하겠다고 하였고, 1987년 2월에는 광주시내 특수판매장을 방문하여 현재의 공장출하가기준 100~102%의 판매가격을 104%선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즉시 중지할 것과 5개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명하였다.

4) (주)삼익가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공정위 1985. 10. 4. 의결 제85-74호, 심결집 5권 158쪽)

(주)삼익가구는 1985년 9월 당시 전국적으로 120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가구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인데, 동 대리점계약 제3조는 '갑(피심인)은 을(대리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을이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희망소비자가격을 을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제8조는 '갑이 권장하는 희망 소비자가격을 무시하고 부당한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1985년 2월 1일자로 상품 별 공장도가격과 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작성하여 각 대리점에 배포하였고, 같은 해 4월과 6월, 7월에도 신제품의 공장도가격과 소비자가격이 표시된 신제품가격표를 각 대리점에 통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즉시 중지할 것,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과 판매가격을 각 대리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을 지체없이 발송할 것을 명하였다.

5) 대우정밀공업(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공정위 1984. 8. 8. 의결 제84-35호, 심결집 3·4권 167쪽)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는 1984년 4월 당시 전국적으로 42개의 대리점조직을 가지고 피아노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전국 대리점주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역 운반비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가

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래 대리점측에서 부담하던 운반비를 피심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라 대리점의 마진율도 종전의 23.8%에서 25.6%로 인상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대리점업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피심인은 1984년 3월 5일자로 각 대리점에 '전국 통일가격표'라는 제하에 피아노의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재한 가격표를 시달하여 매장내에 부착하도록 한 후, 일간지에 대리점의 소비자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일반 소지자에게 광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계약서 등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강제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대리점주회의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신문광고를 통하여 각 대리점의 소비자가격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주지시켰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과 판매가격을 대리점이 자유롭게 결정해도 좋다는 것을 각 대리점에 문서로 통보할 것을 명하였다.

6) (주)유공 등의 아스팔트사건(공정위 1984. 5. 9. 의결 제84-21호, 심결집 3·4권 116쪽)

(주)유공 및 한전유화(주)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주)유공은 인성산업(주) 등 5개 사업자와 각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아스팔트를 판매함에 있어서 1983년 4월 26일자로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통보하였다. 그리고 한전유화(주)는 한전개발(주) 등 2개 사업자와 각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아스팔트를 판매함에 있어서 1983년 4월 30일자로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통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중지할 것과 앞으로는 판매가격을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 대리점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7) 신생상사(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공정위 1984. 5. 4. 시정권고 제84-3호, 심결집 3·4권 310쪽)

신생상사주식회사는 자신의 제품에 가격표를 붙여서 출고하고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에 '갑(피심인)은 을(대리점)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소매가 30% 할인에 의해 공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실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30%(대리점의 마진) 할인해서 제품을 공급하였다. 또한 '을은 갑이 결정한 소매가에 따라 정찰판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독자적으로 할인 또는 인상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도 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즉시 중지할 것과 위 계약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8) 동양맥주(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공정위 1981. 6. 8. 시정권고 제1호, 심결집 1 · 2권 3쪽)

동양맥주주식회사는 단일서식을 마련하여 1980년 11월경부터 전국에 걸쳐있는 814개 가맹점과 오비베어체인 가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약정의 내용중에 ‘생맥주 및 안주의 판매가격은 갑(동양맥주주식회사)이 정하는 가격을 필히 준수한다’고 규정하여 갑이 지정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피심인의 계약행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서 위법으로 보아, 동양맥주주식회사와 그 가맹점간에 체결된 가입약정중 문제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9) 남양유업(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⁹⁾

(1) 사실개요

① 피심인의 지위

남양유업주식회사는 우유, 조제분유 등 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1991년도 조제분유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4.8%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이다.

② 피심인의 거래상황

피심인의 우유 등 음료류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전속대리점을 통하여 소매상이나 가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조제분유 등 분말식품류는 대부분 특약점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전문점을 통하여 소매상으로 유통되고 있다.

③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은 자기의 대리점 및 전문점과 위탁판매계약 및 특약점거래약정 등을 체결하여 거래함에 동 약정서가 자기가 지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자기의 대리점 및 전문점이 판매하는 가격을 미리 정하여 약정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전문점과의 특약점거래약정서에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2) 심결요지

① 피심인이 자기의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소유권유보 및 이전관계 등에 관한 계약내용으로 보아 형식적으로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으나 실질적인 위탁판매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타사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전속대리점계약으로 판단되고,

9) 공정위 1992. 12. 28, 92-156호 의결

- ② 피침인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서에 규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법령의 적용 및 주문

위 사실에서 피침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 ① 피침인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대리점 및 전문점이 판매하는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피침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기의 대리점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 조항 중 제3조 및 제26조 그리고 자기의 전문점과 체결한 특약점 거래약정서 조항 중 제3조, 제7조 및 추가 약정서 조항 중 제1조의 관련내용을 위 1.의 시정명령 내용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 ③ 피침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①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침인의 모든 대리점 및 전문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사실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개 중앙종합 일간지에 4단×15cm의 크기로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통지문안 및 공표문안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6. 맷음말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에서는 경제질서가 私的自治에 맡겨져,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든 것이 최적의 상태로 자동조절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私的自治에 맡겨지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財貨와 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도 않았고,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은 곧바로 사회통합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자유방임주의가 社會的 正義와 安全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자, 국가는 사회적 정의와 안전에 대한 일정한 임무를 인식하고 자유방임적 경제질서에 대한 修正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곧 국가법질서에 경제질서가 포섭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정의·안전에 지향된 국가적 임무가 경제질서에 대하여介入하고 干涉하는 것이 正當化되었다.

독과점의 형성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독과점이 형성되면 독과점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하게 될 것이므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마비되고, 이것은 소비자의 이익 침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쟁이 배제되는 결과 독과점기업 자체의 체질도 약화되어 기업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 등 국민경제적으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¹⁰⁾ 바로 이러한 문제, 즉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그럼으로써 자유 시장경제를 유지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이 출현하였다.¹¹⁾

이러한 독점규제법의 연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안에서 (주)선영메디칼이 공급하는 가정용 온열 치료기를 지점 및 지사에게 판매함에 있어 가정이나 병원 등 판매처별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행위는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요한 가격경쟁질서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경쟁저해성이 크다. 또 바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과 거래종료등의 제재조치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금지되는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개입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시정권고라는 당사자의 수락을 필요로 하는 미약한 방편을 채택한 데에는 비판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판매목표강제와 불의제공도 같이 문제로 되었다. 특히 催告節次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제되는 불공정약관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는 催告를 거친 후에 계약을 解止하는 것이 定型的인 내용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의 정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10) 독과점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李南基, 신공정거래법, 1993, 37쪽 아래; 黃迪仁·權五乘, 경제법, 1995, 61쪽 아래 참조.

11) 각국의 독점규제법 역사에 관해서는 李南基, 신공정거래법, 50쪽 아래; 黃迪仁·權五乘, 경제법, 79쪽 아래 참조.